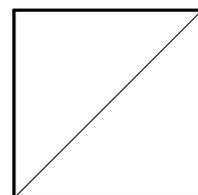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423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2. 22. (제 22 차)	

(주)우리은행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12. 22.

1. 의결주문

(주)우리은행에 대한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융사고에 따른 부문검사 실시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검사인력이
과다 투입*된 (주)우리은행에 감독분담금을 추가 부과하고자 함

* 검사인력 투입 연인원수가 은행·비은행 금융영역의 상위 0.1%내에 해당

3. 주요골자

(주)우리은행에 2020년 감독분담금의 30%를 추가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4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 제1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1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 제1항

<별지>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 다 음 -

1. 부과내용

- (주)우리은행에 감독분담금 4,598,758,000원 추가 부과
 - 부과사유 : '19년 중 금융사고에 따른 부문검사 실시로 검사인력이 과다 투입되어 감독분담금 추가 부과대상에 해당
 - 법적근거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4항

2. 부과근거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 실시로 인해 해당기관에 투입된 검사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에 투입된 검사 연인원수 분포상 상위 0.1%내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분담금 총액의 30%를 추가 부과 가능
- (주)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전자금융사고('19.6.4.~6.14.),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상품선정 및 판매관련('19.8.23.~11.1.))에 따른 부문검사 실시로 357명의 검사 연인원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은행·비은행 금융영역의 검사 연인원수 분포상 상위 0.1%(341명)내에 해당

(붙임)

관계 법규

□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의2(감독분담금의 산정방법) ④ 원장은 직전사업연도 중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부문검사에 한한다.) 실시로 검사대상기관의 금융영역별 투입 연인원수가 상위 0.1%(평균+표준편차 *3.09)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검사대상 기관별 분담금 총액에 30%를 추가하여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7조(금융사고 보고) ① 규정 제41조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 검사에서 적출된 금융사고는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며,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기관의 사고금액(사고발견시점의 피해금액으로서 회수예상금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 3억원(규정 제3조제1호가목 내지 라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및 거목 내지 더목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중앙회 이외의 금융기관은 1억원)이상인 경우
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다만,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나 서류징구 미비 등 단순 절차사항만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 사고보고)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처리시스템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2.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국
연 락 처	02-2100-2782	02-3145-5898